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도결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6874 |
|----------|-------|

발의연월일 : 2026. 2. 13.

발 의 자 : 안도결 · 양부남 · 정준호  
박균택 · 신정훈 · 전진숙  
민형배 · 조인철 · 정진욱  
문금주 · 최혁진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인공태양, 수소, 분산전력망, 재생에너지 등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특화분야 교육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융복합 인재의 조기 발굴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글로벌 융복합 고급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에너지영재

학교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특화 교육을 바탕으로 한 과학 영재를 교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분야 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에너지분야 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나.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하되 에너지영재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에너지영재학교의 교원으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원의 보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제18조의2 및 제24조의2).

다. 에너지영재학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에너지영재학교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편, 다른 학교 교원을 에너지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래 에너지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인재 양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18조의3, 제20조제1항·제5항·제6항 및 제21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타 입법례와 같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안 제23조제1항).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부설기관) 한국에너지공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에너지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에너지 분야 과학 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에너지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두는 에너지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에너지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에너지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부설기관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에너지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에너지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에너지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에너지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의3(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에너지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한국에너지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영재학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원인사위원회”를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교원인사위원회와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에너지영재학교에는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정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을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학력의 인정) 에너지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lt;신    설&gt;</u><br><br>제4조(정관) ① 한국에너지공대의<br>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br>포함되어야 한다.<br>1. ~ 3. (생    략)<br><u>&lt;신    설&gt;</u><br>4. ~ 11. (생    략)<br>② · ③ (생    략)<br><u>&lt;신    설&gt;</u> | <u>제3조의2(부설기관) 한국에너지공</u><br><u>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u><br><u>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u><br><br>제4조(정관) ① -----<br>-----<br>-----.<br><br>1. ~ 3. (현행과 같음)<br><u>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u><br>4. ~ 11. (현행과 같음)<br>② · ③ (현행과 같음)<br><u>제8조의2(에너지영재학교의 설치</u><br><u>· 운영) ① 한국에너지공대는</u><br><u>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u><br><u>가 차원의 선도적 에너지 분야</u><br><u>과학 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u><br><u>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u><br><u>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u><br><u>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u><br><u>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u><br><u>정 이하의 학교(이하 “에너지</u><br><u>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u><br><u>다.</u><br><u>② 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u> |

제9조(평의원회) ① 한국에너지공  
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  
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  
한다.

1. ~ 5.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대에 두는 에너지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사·교  
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  
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에너지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제9조(평의원회) ① 한국에너지공  
대(부설기관은 제외한다)-----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에너지영재학교의 교  
직원) ① 에너지영재학교에 교  
원으로서 교장·교감 및 교사  
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에너지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

<신 설>

제20조(교원의 임면)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

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에너지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의3(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에너지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교원의 임면) ① 한국에너지공대(에너지영재학교를 포함

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② ~ ④ (생략)

⑤ 총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한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  
-----  
-----  
-----  
-----.  
-----  
-----  
-----  
-----  
-----  
-----.

⑥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  
-----  
-----  
-----  
-----  
-----  
-----.  
-----  
-----  
-----

주어야 한다.

1. ~ 4. (생략)

⑦ (생략)

제21조(교원인사위원회)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학생)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

-----  
-----  
-----.

1. ~ 4.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교원인사위원회와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에너지영재학교에는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23조(학생) ① -----  
-----  
-----  
-----  
-----정하고, 기후에너

|                                                                         |                                                                                                                                                                                                                   |
|-------------------------------------------------------------------------|-------------------------------------------------------------------------------------------------------------------------------------------------------------------------------------------------------------------|
| <u>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u><br>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② (생 략)<br><u>&lt;신 설&gt;</u> | <u>지 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u><br>-----.<br>② (현행과 같음)<br><u>제24조의2(학력의 인정) 에너지영</u><br><u>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u><br><u>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u><br><u>「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u><br><u>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u><br><u>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u> |
|-------------------------------------------------------------------------|-------------------------------------------------------------------------------------------------------------------------------------------------------------------------------------------------------------------|